

---

#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집(FAQ) 제2권

---

2019. 12. 6.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 2019. 12. 31.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품(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과 관련하여 정책설명회, 전화 문의,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서 자주 접수된 질문을 뽑아 답변을 정리한 것이며, 2019. 8. 1. 발행한 제1권에 이어 전환물품 중 질문이 가장 많은 화장비누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질문에 대한 응답은 발행일 현재의 법령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향후 법령 개정 또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응답에 대해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mfdscos@korea.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전환물품 대상

1. 설거지 비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있나요?

☞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얼굴 등 인체를 깨끗이 할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되는 비누를 의미하며, 그릇을 씻기 위한 제품은 화장품법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하시는 설거지비누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세척제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에 해당한다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재 공방에서 비누, 향수, 방향제 등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수와 방향제는 화장품인가요?

☞ 인체에 사용하는 향수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화장품 법령에 따라 제품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기 중이나 섬유의 냄새를 좋게 하는 방향제, 탈취제의 경우 화장품이 아니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2019. 1. 1.)」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하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업등록 -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공통

3. 화장품 제조업(또는 책임판매업) 등록 후 화장품제조업등록필증(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등록필증)은 언제부터 수령 가능한가요?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 일괄적으로 수령하나요?

☞ 등록필증의 발급은 해당 민원 건이 처리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필증상의 등록일자는 2019. 12. 31.로 인쇄되어 나옵니다.

4.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 시, 기존에 있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호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식약처에 이미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상호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은 상호만으로도 해당 업자의 실체에 대한 특징이 가능하여

야 하므로, 동일 상호의 중복등록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미 동일한 상호로 등록한 업체가 있다면 해당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관할 지방식약청의 담당자는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 전 이미 등록된 업체의 상호를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제조업 등록

#### 5. 화장품 제조시설 규모에 대한 면적(평수) 기준이 있나요?

☞ 아닙니다. 화장품 제조시설의 요건 중 규모(평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6. 비누공방에서 제조 이외에 수업 등을 할 수 있나요?

☞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제조 시와 수업 시에 같은 시설(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제조 시간과 강의 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각 기능에 따른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7. 근린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 주거시설 등도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화장품법에서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건축법에 저촉되어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건물이 제조업이 허용되는 건물인지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 화장품법에서는 과세 유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체에서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사업자 등록에 추가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기준은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 시설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인가요?**

☞ 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경우 방으로 구획하지 않더라도 해당 작업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방(房) 내에서 칸막이, 바닥에 선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구획하는 등 제조시설 기준은 2020년 이후에도 지속하여 운영할 방침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시적인 계획은 없으나, 향후 화장비누의 품질과 관련하여 제조시설 기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거나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기준이 일반화장품에 준하여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화장비누를 소량 제조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추어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 제조 수량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기 위해 화장비누를 제조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11.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시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품질검사 위수탁계약서를 제품을 제조하기 이전에도 준비할 수 있나요?**

☞ 위수탁계약서는 업자·기관 간의 계약서이므로 제품 제조 이전에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책임판매업 등록**

**12. A사가 제조한 비누를 B사가 단순히 판매만 할 때 B사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 다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단순히 유통·판매하는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화장품 제조업자

에게 위탁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A사가 비누를 직접 제조하고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둘 다 등록하여야 합니다.

## 5 제조 및 품질관리

### 13. 제조단위(로트)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제품의 제조단위(로트)는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제품 특성 및 품질 균질성이 확보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품의 특성 및 품질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14. 공방에서 화장비누 제조 시, 나무 재질의 선반이나 섬유 소재 커튼을 사용해도 되나요?

☞ 화장품 법령에서 제조에 사용하는 제조설비 및 기구의 재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조설비 및 기구로 인하여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무 재질의 선반은 미생물 오염이 쉽게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섬유소재 커튼의 경우 먼지에 취약한 소재이므로 되도록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15. 고휘비누 베이스에 일부 원료(색소, 향료 등)를 혼합하여 맞춤형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 비누 베이스에 일부 원료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서 위 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고한 매장에서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화장품으로서 조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베이스 및 원료를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 위 맞춤형화장품 제도는 2020. 3. 14. 시행 예정입니다.

**16. 화장비누의 제조일자, 사용기한, 숙성기간 등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제조’란 식약처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원료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 등의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제조일자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 등 업체에서 제조일자 부여 기준을 정하여 이를 매뉴얼화 한 후 이에 따라 제조일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상 별도로 정한 사용기한은 없으며, 업체가 사용기한을 정할 때에는 안정성 시험 결과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숙성기간은 비누에 특성에 맞게 업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품질검사는 언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화장품법 제11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는 해당 제조번호를 유통하기 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적합한 경우에만해서 유통하여야 합니다.

**18. 비누의 수분함량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 화장품 안전기준에서는 수분함량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체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품질검사 기준으로는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19. 비누 제조 시 제조 과정 중에 의도하지 않았으나, 가열 온도 등에 의해 검은 점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물 혼입’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 화장품법 제15조제4호에 따라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은 판매하

여서는 아니 됩니다. 화장품법에서 '이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물이란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가 아닌 것으로서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상적인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이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공정 중에 발생하더라도 검은 점을 자체 품질 기준의 부적합 사항으로서 관리하고자 한다면 검은 점이 있는 있는 제품은 부적합으로 판정 할 수 있습니다.

## 6. 안전기준(원료) 관련

20. 화장비누 등 화장품에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성분 이외의 성분을 색소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화장품에는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성분만을 색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색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이 필요한 경우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시에 등재한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색소란?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띄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21. 화장품 제조업자가 원료를 직접 가공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나요?

☞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 원료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스스로 충분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면 직접 원료를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료의 제조 및 공급 주체와 관계없이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책임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2. EM (effective microorganism, 유용미생물군) 발효액을 화장비누 제조에 사



**용할 수 있나요?**

☞ 원료 제조 또는 비누 제조 중에 미생물을 사용한 발효 공정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완제품 화장비누는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미생물 한도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23. 사용금지 원료가 아니라면 화장품 제조에 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원료에 대한 책임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있는 것인가요?**

☞ 2012년 화장품법 전면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용가능한 원료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사용금지원료 및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및 색소 등 사용상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원료 및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그 밖의 성분은 업자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사용원료에 대한 품질확보는 책임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이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원료 사용 전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4. 색소 중 눈 주위 및 입술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제한을 하고 있는 성분을 화장비누에 사용할 수 있나요?**

☞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제2조에 따라 '눈 주위'라 함은 눈썹, 눈썹 아래쪽 피부, 눈꺼풀, 속눈썹 및 눈을 둘러싼 뼈의 능선 주위를 말합니다.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음"은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새도,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등의 눈 화장용 제품류와 같이 눈 주위에 사용되는 제품에 한해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얼굴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화장비누의 경우 눈 주위 또는 입술에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비누에 눈 주위, 입술 주위 등을 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25. 비누 제조에 수산화나트륨 등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화학물질 등록 및 취급시설 등록 등 「화학물질관리법(약칭: 화관법)」 및 「화학물질 평가에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약칭: 화관법) 제3조 및 「화학물질 평가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관법 제3조 제3항에서 ‘개별 법령에서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에는 화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화장품법에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화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7 표시기재 · 광고 관련

26. 기존에 제조된 제품의 용기 또는 단상자 등 부자재를 화장품으로 전환된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부자재 재고에 따라 용기는 기존의 포장재를 사용하고 단상자만 추가 인쇄하는 경우, 용기에는 공산품의 표기사항이 인쇄되어 있고 단상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표기사항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화장품 표기사항은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항이므로 용기와 단상자의 표시기재사항이 달라 소비자의 혼동이 우려된다면 오버레이블링(over labeling)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7. 2019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의 표기사항을 스티커 작업 등으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수정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고형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2019년 12월 31일)되기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화장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28. 화장비누의 경우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표기 시, ‘수분중량’만을 표시할 수는 없나요? 건조중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가요?

☞ 수분중량과 건조중량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유통화장품은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정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내용량은 표시량의 97%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화장비누의 경우 동 내용량 기준을 ‘건조중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내용량 기준을 수분중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유통 중 수분손실로 인해 내용량이 표시량의 97% 이상이라는 기준에 부적합할 우려가 높아 수분중량을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29. 수출할 화장비누의 경우에도 한글 표시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가요?**

☞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한글을 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국(수출대상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30.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 해야 하는 사항 중 바코드가 있던데, 바코드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 화장품의 바코드 표시방법은 식약처 고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과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www.gs1kr.org)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식품원료(요구르트, 우유, 고구마 분말 가루 등)를 사용하는 경우 전성분 표기에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상품명을 기재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화장품의 성분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한 원료의 ‘화장품 표준 성분명’을 반드시 확인하여 전성분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화장품 표준 성분명은 대한화장품협회가 운영하는 화장품성분사전(www.kcia.or.kr/ci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자사에서는 원료공급업자에게 혼합원료를 구입하여 제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합원료는 어떻게 원료목록보고나 전성분 표기를 해야 하나요?**

☞ 원료 공급자로부터 혼합원료에 대한 조성 정보를 제공받아 화장품 법령에 적합하게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사용하는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원료공급업자로부터 혼합원료의 조성을 확인하여 개별 성분명으로 원료목록보고 및 전성분을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33. 화장비누 제조 시 글리세린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생산 과정에서 글리세린이 생성되는 경우 글리세린을 전성분에 표시하거나 표시·광고할 수 있나요?**

☞ 화장품의 전성분표기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기재·표시하는 것으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는 원료를 전성분에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산성도(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 또는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 또는 비누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반응 생성물로 글리세린이 생성된다면, 전성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내 글리세린의 생성 및 잔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성분에 관련된 표현은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공산품일 때 KTR에서 S마크(항균)를 받았다면 항균비누로 표시·광고할 수 있나요?**

☞ 항균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 고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는 인체적용시험자료로 제품의 항균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광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⑧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35. 2019년 12월 31일에 화장품으로 전환이 완료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2019년 생산량에 대한 생산실적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전환품목만을 취급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의 생산실적은 2020년 실적에 포함하여 2021년 2월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6. 원료목록보고는 언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화장품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품별로 유통·판매전에 원료목록 보고를 해야 합니다.

37. 시행일(2019년 12월 31일) 전에 미리 원료목록보고를 할 수 있나요? 시행일 부터 화장비누를 유통·판매하려고 한다면 언제 원료목록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 「화장품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전환물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시행일 이전 미리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도 원료목록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38. 화장품 내용량 표시 시에는 수분중량과 건조중량을 모두 기재한다고 들었는데,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시에는 용량을 어느 기준으로 보고하여야 하나요?

☞ 화장품의 생산실적 보고 시에는 수분중량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9 기타

39. 제모왁스나 고흥비누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화장품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신청 시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서 심사받거나 보고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